

-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•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•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
-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•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·예술도시 •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



연수구보

■ 구정 방향 ■

함께 가꿔요!

행복한 연수!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(우)406-120 ☎ 810-7072 / FAX 810-713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625호 2011. 4. 4.(월)

【조 례】

-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00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)
..... 1
-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01호(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)
..... 4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(공포)

제 명	주 요 내 용
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	☐ 개정 이유 ○ 민간위탁의 재 위탁 및 기간연장 등 당초 의회에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민간위탁의 재 위탁 및 기간 연장시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 시에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☐ 주요 내용 ○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(제4조 제3항 후단신설) - 자치사무의 경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과 위탁기간 만료 후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신설함.

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2011. 4. 4.

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700 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위탁기간 만료 후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등) ①~② (생략) ③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후단신설>	제4조(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위탁기간 만료 후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(공포)

제 명	주 요 내 용
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	☐ 개정 이유 ○ 현행 「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대해 규정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☐ 주요 내용 ○ 규정 조문 정비(제4조 제1호, 제2호, 제5조)

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

2011. 4. 4.

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701 호

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행사에 재향군인회를 통한 초청”을 “행사에 초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”를 “각종 기념일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”를 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회원 안보의식”을 “구민 안보의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예우)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 1. 각종 <u>행사에 재향군인회를 통한 초청</u> 및 의전상의 예우 2. <u>재향군인회와 관련된</u>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. 생략 4. 생략 제5조(예산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. (생략) 2.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. <u>회원</u>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	제4조(예우)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 1. 각종 <u>행사에 초청</u> 및 의전상의 예우 2. <u>각종 기념일</u>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제5조(예산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<u>다음</u> <u>각 호의</u> 사업에 대하여----- ----- ----- <u>< 삭제 ></u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국민</u> 안보의식----- -----